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2
----------	------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의자 : 민홍철 · 김두관 · 이찬열
김상희 · 조배숙 · 김해영
우원식 · 최인호 · 강훈식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행정 훈령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를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도 확대함(안 제25조의2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보칙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혜가 또는 변경혜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혜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혜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28조의 과태료 수입을 우선 사용한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 ② (생 략) <u>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p> <p>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p> <p>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제5장의2 보칙</p> <p style="text-align: right;">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p>

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28조의 과태료 수입을 우선 사용한다.

<신 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